

<서 면 답 변>

○ 박명자 위원('99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99. 11. 22)

<질 의>

- 청소년 수련원 및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과 관련 연1회만 점검하는지와 점검시 지적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한 곳은 몇 군데이며 내년 예산에 얼마를 편성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청소년 수련시설은 다중이용시설로써 연1회도 안전점검반 기동반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금년의 경우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 총4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은 자체적으로 보수 보강토록 조치하였으며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인 양평군 청소년수련원에 대하여는 2000년 예산에 시설개·보수비로 국비 1억원과 군비로 5,000만원을 투자하여 개·보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 의>

- 장애인복지시설은 33개소인데 사회복지시설 일체 점검시에는 30개소만 점검한 이유는 무엇이며, 감사자료 P129에 장애인복지시설 행정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에는 4개소만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점검을 안 한 것인지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장애인복지시설은 현재 수용시설 30개소, 근로시설 3개소 등 총 33개소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씨랜드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 점검시에는 수용시설 위주로 하게 되어 30개소만 점검하고 근로시설 3개소는 누락되었습니다.
- 또한 위원님께서서는 제출된 감사자료 P129에 4개소만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시설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셨는데 현재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시설에서는 월1회 자체 안전점검을, 시·군에서는 분기별 1회, 도에서는 문제시설을 중심으로 연2회 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올해에도 시·군 및 도에서는 11월초 33개 전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 감사자료에는 시·군에서 행정적인 지도·감사 위주로 내용을 취합하다 보니 안전점검한 실적이 일부 누락되어 기입하게 되어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 의〉

- 생활보호대상자 중 65세이상 노인이 약 2만명이상 되고 이들 중 20%이상이 매일 1끼이상 식사를 거르고 있다는 언론의 설문결과를 인용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책과 예산지원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금년초 여성정책국에서 도내 전 생활보호 노인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 관련부서 조사결과 노인들에게 1일 3식을 정기적으로 하시는지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가구 17,777세대 중 92.3%인 16,408세대가 정기적인 식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7.7%인 1,369세대는 정기적인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결과에 대해 언론에서 20%이상 1식의 식사를 거르고 있다고 보도하게 된 것입니다.
- 현재 결식노인의 급식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무료 경로식당은 74개소로 1일 10,113명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정부의 중산층 보호에 따라 1,499백만원의 결식노인 무료급식비가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도비 384백만원, 공동도금회 91백만원, 시·군비 및 경로식당 운영단체 부담 등 총 2,815백만원의 지원으로 결식노인들의 급식을 돕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질 의>

- 경기도 보건복지국 업무 중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내용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박명자, 나진택 위원('99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99. 11. 22)

<질 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100분의 2이상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2%이상을 채용하지 못한 7개 시·군에 제재조치가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그 동안 우리 경기도에서는 도지사님께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한 결과 지난 10월말 현재 도청 공무원의 2.2%이상을 고용함으로써 도 전체는 2.07%의 장애인 공무원채용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7개 시·군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도지사께서는 지난 주 간부회의시 장애인공무원 2%를 고용하지 못한 시·군에 대해서는 도 예산지원이나 그에 상응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신 바도 있습니다.
- 다행히 지난 11월 20일자로 임용후보자를 발령함으로써 현재는 수원, 안양, 가평군에서만 법정 의무고용 미달로써 오는 12월 5일 실시하는 사회복지사 특별임용시 보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90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보사환경위)

도, 시·군 장애인공무원 현황

'99. 11. 20 현재

구 분	총정원(A)	장애인적용 대상정원(B)	고용의무 인원(C)	장애인공무원 현원(D)	고용률 (D/B)	법정고용 미달인원	비 고
합계	33,239	17,071	340	364	2.13	5	
도	5,681	1,452	29	32	2.20		
시·군계	27,558	15,619	311	332	2.13	5	
수원시	2,135	1,243	25	23	1.9	2	
성남시	2,231	1,455	29	31	2.1		
의정부	763	463	9	9	2.0		
안양시	1,563	1,078	22	20	1.9	2	
부천시	1,982	1,371	27	27	2.0		
광명시	770	363	7	8	2.2		
평택시	1,394	971	19	21	2.2		
동두천	462	269	5	6	2.2		
안산시	1,226	763	15	22	2.9		
고양시	1,696	932	19	20	2.1		임용후보1
과천시	465	257	5	5	2.0		
구리시	569	375	8	8	2.0		
남양주	983	520	10	10	2.0		
오산시	386	249	5	6	2.4		
시흥시	593	377	8	8	2.1		
군포시	615	376	8	9	2.4		
의왕시	437	294	6	6	2.0		
하남시	522	341	7	7	2.1		
용인시	954	423	8	9	2.1		
파주시	821	321	6	6	2.0		
이천시	749	436	9	10	2.3		
안성시	723	314	6	8	2.5		
김포시	585	242	5	5	2.1		

구 분	총정원(A)	장애인적용 대상정원(B)	고용의무 인원(C)	장애인공무원 현원(D)	고용률 (D/B)	법정고용 미달인원	비 고
양주군	529	248	5	5	2.0		임용후보1
여주군	602	252	5	6	2.4		
화성군	795	257	5	5	2.0		
광주군	625	232	5	10	4.3		
연천군	564	274	5	5	2.0		
포천군	667	353	7	7	2.0		
가평군	509	258	5	4	1.6	1	
양평군	643	312	6	6	2.0		

○ 김주삼 위원('99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99. 11. 22)

〈질 의〉

- 행정사무감사 자료 결과 매점 및 자판기에 대해 장애인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면서 기초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각급 행정기관의 자판기를 장애인 등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 또한 이제는 장애인에게 시혜성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는 자립지원 대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일반 시설물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 변〉

-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판기에 대해서 시·군에서도 자체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등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일반시설물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장애인 등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질 의>

-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의 인건비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 지원금도 줄어들고 있으며 인건비 내용도 작업장마다 차이가 많다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 변>

-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지금까지 1개소당 5억원 기준으로 도비가 70%인 3억 5,000만원, 시·군비가 15%인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해 오고 있으며 금년까지 총 27개소를 지원하여 현재 18개소가 개원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시·군에서는 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재활작업장 운영실태를 보면 시·군별로 지원금이 '99년도 기준으로 군포시의 300만원에서 부천시의 1억여원의 예산이 지원된 것은 시·군마다 장비보강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차이로 발생한 것이며 인건비를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연도별로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재활작업장이 시·군에 따라 운영의 결과가 현격하게 차이가 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것은 작업장별로 운영자의 경험이나 능력, 시장·군수의 관심도, 해당 시·군의 제반여건, 제조품목의 시장성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많으나 시행착오를 거쳐 차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앞으로도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장애인복지의 최종목표로 삼고 장애인작업장 생산물품 판로구축 등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좀더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 의>

- 경기도 사회복지관 중 1/3정도가 정부의 지원금이 없으면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법인 취소하고 다른 법인으로 교체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사회복지관 운영은 시장·군수가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법인의 출연금, 후원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에서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이 있는 경우는 위탁계약기간 만료시 위탁자를 교체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 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법인출연금에 대하여는 특정한 출연의무규정은 없으며 운영비 20%만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설립허가시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질 의>

- 명예마약류지도원 운영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보고된 활동외에 마약류중독자 상담 등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 변>

- 마약류의 확산방지 및 감시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의사, 약사 등을 마약류명예지도원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 마약류명예지도원의 활동은 대부분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마약류중독자는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어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는 현재까지 없었으며

- 마약류명예지도원 전문정보강 교육 등을 실시하여 운영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주삼, 김도삼 위원('99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99. 11. 22)

〈질 의〉

- 에바다복지회 정상화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도와 평택시의 추진상황과 원생의 숫자, 에바다 특수학교의 폐교시 문제점, 그리고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며 경기도의 정상화 계획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에바다복지회 관련해서는 별첨자료(행정사무감사 자료 복사)와 같이 지도·감독 관청인 평택시에서 업무를 추진하였고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교육청, 보건복지부가 해결방안을 협의하고 같이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 이사회 7인의 구성을 보면 이사장은 이성재 국회의원이며, 이사에 김홍신, 김명섭 의원, 평택대 김범수 교수 등 관선이 4명, 나머지 구 법인측 3인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 원생의 숫자는 정원이 120명이나 사건당시에는 72명이었고 농아원생은 40명입니다. 또한 특수학교 학생은 87명입니다.
- 특수학교 폐교에 대해서는 폐교이후 교사의 처리문제, 농아학생의 처리대책 등이 문제가 되어 교육청에서 수차례 검토한 바 폐교하지 못했습니다.
- 법인이사회에서는 지난 9월 1일에 법인 정관을 개정하여 의결정족수를 2/3이상 찬성에서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개정하였고 그 이후 복지관 직원 복권, 농아원장 임명, 에바다특수 학교장을 임명하였으며
- 지난 11월 17일에는 이사회에서 권오일 교사의 복직을 의결하여 11월 22일 오늘 출근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 앞으로 권오일 교사가 복직하고 해아래 집 아이들이 농아원에 들어오면 농아원생들의 반발 등 약간의 갈등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후에는 법인 이사회에서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에바다복지회 운영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에바다 복지회 관련 최근 상황

□ 현재 상황

- 에바다 사태의 정상화추진 조치를 위해 '98 국정감사에서 요구된 대로 이성재 국회의원을 대표이사로 직권 선임하여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사진 개편 및 직권 파견(7명) : '99. 4. 8

- 대표이사 : 국회의원 - 이성재
- 이 사 : 국회의원 - 김홍신, 김명섭
평택대 교수 - 김범수
목사 - 이계복, 최성호, 김두만
- [이사취소 : 대표이사 박영규, 이사 한정수]
- ※ 관선 이사진 파견에 대하여 재단측에서 법원에 「임원취소 및 임시이사직권 선임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임시이사 직권선임 효력정지 신청」소송('99.4. 26)을 동시에 제기
- 효력정지 신청 소송 결과
 - 수원지방법원 : 원고 인용 효력정지 결정('99. 5. 17) - 즉시항고
 - 서울고등법원 : 각하 결정('99. 7. 9)
['99. 7. 20 대법원 상고중 (전 대표이사 박용규)이나 우리시의 임시이사 직권선임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될 전망이다]
- 임원취소 및 임시이사 직권선임 처분취소 청구소송
 -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대법원 결정시까지 심리연기

□ 법인정관개정 : '99. 9. 1

- 재단과 농성측간 합의로 법인정관 개정(의결정족수 관련)이후 재단 및 시설이 정상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임.
- 정관변경내용
 - 이사회는 재적이사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본 정관은 재적이사 2/3이상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학교장 교체 임명 : '99. 9. 13

- 민경락 → 송진훈

[권오일 교사 복직 문제]

- 이성재 이사장의 복직 약속
- 해아래의 집 학생 복귀를 조건으로 복직을 추진하고 있음.

○ 김장훈 위원('99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99. 11. 22)

<질 의>

- '98. 11. 9 경기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판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등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준비상황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2000년 7월부터 장애인 등에게 매점 및 자판기를 이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산하기관에는 조례가 제정된 사실을 통보하였기 때문에 2000년 7월부터는 장애인 등에게 이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앞으로 2000년 1월부터는 조례 규정대로 매점 및 자판기가 이관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타 시·도 또는 시·군에서 매점 및 자판기를 장애인 등에게 이관하는데 따른 많은 사례들을 참고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질 의>

-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장애인차량이 아닌 차량이 주차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위반차량이 많고 과태료 부과 건수가 1건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과태료 부과건수가 없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금년 6월 8일부터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장애인차량이 아닌 차량이 주차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2시간 경과시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장애인 전용 주차장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지난 6월이후 지금까지는 국민운동차원에서 강한 단속보다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대한 홍보와 계도에 중점을 두어 왔기로서 때문에 과태료 부과 건수도 없고 위반차량도 상당수 있습니다만
- 점차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대한 인식이 정착되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앞으로 장애인전용 주차장 주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주·정차단속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질 의>

- 2억 7,0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이동진료장비를 구입하였고 8,000만원을 들여 초음파를 구입하였는데 이들을 활용한 이동진료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답 변>

- 도 이동진료는 금년 4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99년 1회 추경에 이동진료사업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 그 동안 차량 정수 배정요청, 차량 및 의료장비 조달구입 요청, 이동차량 디자인 구성 등을 거쳐 '99년 11월 17일 차량이 검수되었습니다.
- 현재 치과 재료 및 진료약품을 구입 중에 있으며 11월 29일부터 이동진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 의>

- 한 업체에서 지정폐기물과 병원 적출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답 변〉

- 현행 적출물 처리규칙(보건복지부령 제132호, '99. 9. 21) 제10조제6항에 의하면 “적출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등 다른 폐기물과 혼합하거나 동일한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적출물의 처리시설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등 다른 폐기물의 처리시설과 같은 사업장안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으로 되어 있으나 '99. 10. 20 보건복지부 의정65510-1105호로 통보된 개정 적출물처리규칙 시행관련 주요 유의사항에 의하면 “같은 사업장에 있는 경우에는 담장을 별도로 구획하고 출입문을 별도로하여 적출물 처리시설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감염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별도 구획을 설치하고 그 사실을 설치완료일로부터 7일내에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는 바 이에 대한 확인 및 개정명령 전반에 대한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질 의〉

- 지난 7월이후 아동복지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관련 점검이후 추진실적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아동복지시설 점검은 '99. 7. 6 ~ 7. 10까지 시설 해당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지시하였으며
- '99. 8. 25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안전관리 실태점검사항은 시·군에서 시정조치토록 통보하였음.

〈질 의〉

- 안산시범 보건복지사무소가 '98. 11월 폐쇄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동안 사업평가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시범보건복지사무소는 지역주민에게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95. 7월부터 전국 4개소 중 우리 도에는 안산시에 1개소를 설치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보건과 복지의 연계사업이 부진하였고 방문 보건관련 의료 장비 및 전문인력채용의 한계 등으로 '98. 10 조직개편시 사회여성과 복지사업팀으로 개편하였으며 금년말까지는 기존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고 '98년도까지 운영 실태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등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그리고 금년말까지 시범보건복지사무소의 업무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중앙부처 등에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주삼, 김장훈 위원('99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99. 11. 22)

<질 의>

- 경기도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시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시면서
- 도 차원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그 동안 추진한 실적과 향후 입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우선 평소에 보건복지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시는 가운데 사회복지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시고 정책자료로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대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최일선에 있는 매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 또한 분석하여 제시해 주신 대로 현재의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 IMF상황하에서 늘어난 생활보호대상자를 보호하는 일로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며

- 읍·면·동 기능전환 및 구조조정으로 인한 업무외의 부담도 일부 수행하고 있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하여 우선 금년초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현지방문대화 등을 통해 그들의 욕구를 파악한 결과 ①인원증원과 ②일반직으로의 전환이 이들의 우선적인 욕구였습니다.

※ 욕구분석자료 : 「사회보장제도와 요인분석자료」

- 이에 따라 우리 도의 실정을 보건복지부에 특별건의(지휘서신)하는 한편 중앙의 실업평가단과 연구기관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와 관련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결과 다행히도 265명의 증원과 사회복지 직렬로의 전환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그러나 추가 인원이 배치되어도 일선의 복지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에 있으므로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증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 전국 600명 증원계획(2000년도)

- 또한 내년도 상반기에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한 연찬회를 실시하고 토론회의 정례화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대로 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장훈, 이기우 위원('99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99. 11. 22)

<질 의>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하여

1. 사업에 대한 평가실태와
2. 센터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것인가와
3.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우리 도에서는 정신보건관련 전문가로 기술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지원단에서는 사업에 대한 자문과 지원, 지도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99년의 경우 11월 중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역을 중심으로 현지방문 지도 및 사업체제와 서비스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바 있으며 평가결과는 취합중입니다.
- 사업에 대한 평가방향은 사업내용이나 서비스프로그램의 효율성 등에 대한 상세한 것보다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체제를 구축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앙에서 우리 도와 협의 평가지침을 마련 중에 있어 향후 이에 준하여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정신보건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센터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여 왔으나 2000년의 경우 광주군, 의정부시, 하남시 등이 정신보건센터를 자체운영할 계획인 바 점차적으로 센터를 민간위탁이 아닌 보건소에서 운영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효과적으로 정착되는 ①보건소의 정신보건사업 관리역량 제고를 위한 담당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 ②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관심과 예산증액 ③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체계적 홍보 ④지역봉사단체 등 지역사회의 참여와 복지 관련 지원이 요구됩니다.
-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맞는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예산 확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정신보건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이주석 위원('99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99. 11. 22)

<질 의>

- 장애인신문 구독요망 사항에 대하여 수원시에서는 2,100만원 반영하여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다른 민원사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한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수원시에서는 현재 1급 등록장애인들에게 시 예산으로 신문구독비를 지원하여 750명에게 신문을 구입하여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 2회 발행)
- 또 다른 민원사항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사항은 민원인이 도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하여 달라는 사항으로서 도내 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비로 지원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사항으로서
- 장애인신문 무료구독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의 허용 범위에서 장애인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 의〉

- '98 민원서류 처리현황 중 사회복지법인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의 설립허가 신청 처리가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지적하신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법인설립허가신청 민원은 감사자료 제출에 아래와 같이 착오가 있었으며 처리기한이 지연되지 않았음을 보고합니다. 죄송합니다.
 - 자료제출내용 : 접수일 '98. 12. 14, 처리 : '99. 1. 29
 - 확 인 내 용 : 접수일 '99. 1. 14, 처리 : '99. 1. 29
 - ※ 처리기간 : 15일('99. 1. 30까지)

〈질 의〉

- 민원처리사항 중 '98. 4. 29일 접수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건의 요청 민원서류가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98. 4. 29일 접수된 민원은 대통령비서실에서 보낸 이첩민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로 책정해 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 우리 도에서는 사정이 딱하여 부천시장으로 하여금 생활실태 및 민원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사실조사와 처리계획을 제출하도록 지시하였고
- 이에 따라 부천시에서는 사실조사 및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 처리기한내 처리를 하지 못하고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 참고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는 과정에서 '98. 6. 4일 부산시로 진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질 의>

- 미성년자 단속실적 중 고용에 대한 적발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만 하고 있는지와 고용에 의한 재적발 업소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99년 7월 1일부터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되고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의거 20세미만接客부고용은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과 고발조치하여 형사처벌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도내 미성년자 고용에 의한 1년 이내 재적발 업소는 없습니다.

<질 의>

-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지방비 부담률의 완화가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 그 동안 공공근로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지방비의 가중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99. 9월 행정자치부에 강력히 건의하였고 또한 국정감사시에도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 건의한 지방비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계속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 건 의 사 항 -

· 국비와 지방비 부담율 50:50 → 60:40 또는 70:30으로 하향조정 건의

<질 의>

- 각종 위원회 현황 중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연간 1건도 회의개최 실적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위원회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의료보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설치한 것으로 그 주요기능은 의료보호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군·구 의료보호사업의 조정 및 기타 의료보호사업의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98년도의 경우 의료보호법 개정과 관련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나 금년도에는 의료보호기금관련 의안이 없어 개최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존치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질 의>

- '99. 7월말 현재 보건소 이용실적을 보면 18개 보건소에서 치과진료 실적이 전무하고 1개 보건소에서 한방진료 실적이 전무한 바 동 사업을 존치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수원시 장안구 보건소 등 18개 보건소는 치과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가 마련된 지역으로 치과진료를 실시치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치과진료는 치면세마 등 예방적 차원의 치과진료 및 구강보건교육이므로 점차 보건소의 여건이 준비되는 대로 동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한방진료를 미실시하고 있는 구리시 보건소의 경우 현재 보건소 건물을 신축 중으로 준공이 되는 2000년도 4월에는 한방진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 의>

- 행정자치부 감사시 지적된 사항 중 완결되지 않고 「추진중」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에 파주, 연천 수해에 이어 금년에도 동일하게 수해피해를 입어 도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은 점에 대해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 '96~'98년 수해와 관련하여 감사원 및 행정자치부에서는 이재민 구호비는 사망자 위로금을 비롯해 농작물 및 주택피해 이재민에게 주는 장기생계구호비 등을 중복조사 또는 비대상자가 포함되어 지급하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파주시 등 수해관련 시·군에서는 착오지급된 부분에 대하여 회수 등을 하고 있으나 기 지급한 구호비를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계속 당사자들을 이해시켜 회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흥식 위원('99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99. 11. 22)

<질 의>

-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융자사업 중 5개 시·군(오산시,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포천군)은 대출실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대출실적이 없는 5개 시·군 중 오산시와 파주시는 신청업소가 없었으며, 김포시 11개소, 연천군 2개소, 포천군 11개소에서 신청하였으나 대출신청업소의 보증인 미확보로 대출이 안 되어 보증인이 확보되는 대로 융자 지원할 것입니다.
- 식품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은 시·군의 반상회보와 유선방송 등 식품 관련단체 위생교육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질 의>

- 도내 의료원의 적자해소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경기도에는 수원의료원을 비롯 의정부, 금천, 이천, 안성, 포천 등 6개소가 있으며 현재 경영실태 분석결과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적자운영 요인은 주민들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선호하고 있으며 민간병원에 비하여 인력시설 경영마인드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영개선 전망이 불투명하므로 매년 경상보조를 하여도 경영적자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감사원으로 공공성 및 경쟁력 상실로 수익선이 낮아 경영상태가 불투명하므로 수원의료원에 대하여 민간위탁 운영방안을 강구토록 기 권고받은 바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의료원의 부실운영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학병원 또는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운영하여 의료원의 적자를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질 의>

- 소독의무대상 시설 중 소독 미 실시 351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시기와 업소현황을 서면제출토록 요구하셨으며
- 민간에 대한 방역소독 위탁을 3개 시·군에서만 위탁 실시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군은 위탁을 주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의 도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 변〉

- 방역소독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사항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2에 의거 시장·군수 권한으로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 도에서 일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 현재 위탁하지 않은 시·군에서는 각종 전염병 발생시와 재해발생시 등 수시로 소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보건소 자체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 방역소독업무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질 의〉

-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독감예방접종을 추진함에 있어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는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노인복지증진에 앞장설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 변〉

- 현재 시·군 보건소 및 병·의원에서 독감예방접종을 추진함에 있어 폐·심장·신장·간질환자 등 만성질환자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65세이상의 노인 등을 우선 접종 대상자로 권장 추진하고 있으며,
- '99년 10월말까지 독감예방접종 추진실적은 728,43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65세이상 노인 중 의료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에게는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독감예방접종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시·군 보건소에 대하여 업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질 의〉

- 지역별 장례예식장 65개소의 위치와 평수 등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 변〉

- 장례예식장은 여성정책국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질 의〉

-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 변〉

- 부정·불량식품 생산·유통 근절을 위하여 최근 도내 4,397개 업소를 점검 그 중 1,005개 위반업소를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 IMF이후 생계유지형 영세업소 및 상습고질업소 증가와 규제완화 조치로 인한 부정·불량식품 생산 유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 앞으로 이들 업소에 대하여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도, 시·군 합동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이 낙후된 업소에 대하여는 시설개선 용자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부정·불량식품 신고 (국번없이 1399) 및 주민신고 보상금제(2만원~10만원까지) 활성화를 위하여 반상회보, 유선방송, 시·군정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20개 특별관리 대상식품 등 유통식품에 대하여도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매월 수거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99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99. 11. 22)

〈질 의〉

-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임무 및 임명절차, 각 시·군별 위촉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와 위촉인원 중 수원의 경우 식당경영자가 44.2% 등으로 시민감시단의 본질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다양하게 구성하여 내실있게 운영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답 변〉

-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법 제29조의2 규정 및 식품위생감시지침에 의거 식품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관련과 대학생 등), 소비자단체, 식품관련 협회 등 관련단체 소속직원 중 당해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를 도지사가 임명 위촉·운영하고 있어 각 시·군별 단체장의 관심도와 인구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은 식품위생감시원(공무원)과 합동으로 유통중인 식품 등의 수거지원 등 검사의뢰,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 기타 식품위생에 대한 홍보·계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99. 10월말 현재 425명(소비자단체 28, 여성단체 98, 영양사 127, 관련단체 59, 기타 113)을 위촉·운영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식당경영자는 '98년도에 재정비하면서 감시행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 식품관련단체 소속직원 중 식품접객업소를 직접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모두 해촉 조치한 바 있습니다.
- 참고적으로 현재 수원시 위촉인원 중 음식점지부 등 식품관련단체 소속직원 중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자는 없음을 말씀드리며
- 2000년도에는 더욱더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 위촉·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 성남 인하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대형병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하고 있으며 의료사고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 변>

- 진정 및 의료사고 발생이 많은 의료기관을 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정기 및 민원발생시 수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나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전문분야로써 의료기술 시행에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도록 의료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의료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단체의 의료인 보수 교육을 통하여 환자에게 사전 설명과 진료기록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 계몽하고 있으며 의료분쟁 조정제도에 대한 홍보안내 및 상담 지도 등을 통하여 의료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하루속히 의료분쟁 조정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어야 의료인이나 환자 모두 마음놓고 진료에 임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의료사고에 대한 결과는 이미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민원처리 현황과 의료심사 조정위원회 개최실적 보고로 보고드렸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질 의>

- 약사 결원 보건소 5개소에 대한 향후 충원 대처방안과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현재 양주, 여주, 화성, 포천, 양평 5개 보건소에 약사가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이들 중 3개 시·군(양주, 여주, 포천)에서는 채용의뢰 및 공고를 하였으나 미응시된 상태이며,
- 1개소 (양평)는 채용 공고결과 1명이 응시한 상태로 채용여부를 검토 중이며,
- 1개소 (화성)는 전체 정원이 과원상태로 구조조정이 완료된 이후에 채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김도삼, 이기우, 나진택 위원('99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99. 11. 22)

〈질 의〉

- 경기도의 장애인 업무 전담부서 인력이 타 시·도에 비해 상당히 적다고 말씀하시면서 2000년부터는 장애인 범주가 확대되고 장애인 등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현재의 장애인복지 인력으로 가능한지와 2000년도의 장애인등록수, 타 시·도의 장애인복지 담당인력, 그 동안 장애인복지업무 증가추세, 그리고 앞으로 장애인복지 시책에 대한 전망을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 업무의 폭발적인 증가에 비해서 장애인 부서의 조직이나 인력이 그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 등록 장애인수가 '95년도에 5만 5,000명이던 것이 금년말이면 12만명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0년부터는 장애인 범주가 만성 중증 신장, 심장, 정신질환자까지 확대되어 2000년말이 되면 장애인등록이 약 18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 장애인복지 시책도 가장 열악했던 분야에서 다양한 영역에 맞는 각자의 복지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업무는 상당히 복잡해져서 현재의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 타 시·도의 인력을 보면 우리 도와 등록장애인 수가 비슷한 서울시는 1과 3개계 17명, 등록장애인수가 우리 도의 1/3 수준인 부산, 대구 등도 6명의 인력이며 우리 도의 1/10도 안 되는 울산시가 우리와 같은 인력을 갖고 있습니다.
- 또한 장애인복지 업무는 그 동안 생활시설, 이용시설, 그룹홈 등 장애인복지시설이 '95년도에는 51개 시설에 불과하였으나 금년초에는 121개 시설로 늘어났으며 장애인복지 시책방향이 장애인수용시설 운영 중심에서 재가장애인복지 중심으로 방향이 확대되면서 다양화('95 : 40종→'99 : 65종) 되고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자가 확대('95 : 4,262명→'99 : 8,523명) 되었으며, 고속도로 할인카드를 매월 1,000매이상씩 발급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장애인범주확대로 등록장애인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것이며 장애인복지시책의 확대 및 다양화로 소요예산도 증가하고 장애아동 보호수당, 장애인 부양수당 등 새로운 복지시책의 추가로 업무는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 이런 현실에 대해 그 동안 조직개편 과정에서 장애인부서 인력, 조직 확충을 조직관련부서와 협의하였지만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정수천 위원('99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99. 11. 22)

<질 의>

-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을 통하여 공무원의 청렴성, 윤리성을 강조하시면서 특히 보건·위생분야 공직자복무점검에 대한 실태 및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경기도 공무원의 전반적인 복무실태는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근거하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무과와 감사과에서 주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 도에서는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의식전환을 위해 매월 2회 국내외 유명인사를 초청하여 전직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월례조회 등 수시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생업소 단속시에는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단속실명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위생 등 취약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주민을 위하여 봉사정신과 사명감을 잃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질 의>

- 노숙자보호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제출

〈답 변〉

-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노숙자 보호사업은 IMF 사태로 인해 직장을 잃은 경우와 가정해체 등으로 인해 갈 곳이 마땅하지 않은 노숙자들을 위해 기본적으로 먹고 잠잘 수 있도록 쉼터를 설치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현재 노숙자는 235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우리 도에서는 당초 분기별로 쉼터운영에 따른 평가를 계획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노숙자보호사업운영 방향이 변경되면서(숙식기간 20→3개월연장) 평가기간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지난 6월에 노숙자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평가한 바 안산시 2개소를 1개소로 통합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단순보호를 지양하고 이들이 조기에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재활, 자립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현재 보호하고 있는 노숙자들의 안전보호를 위해 동절기 노숙자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11월 중에 노숙자보호사업에 대하여 쉼터별로 자체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연말이전에 도가 주관하여 점검확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참고로 우리 도의 노숙자보호사업 추진방향으로는
 - 노숙자쉼터는 이용시설이므로 이용자들의 자활, 자립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겠으며 최근 경기회복과 더불어 노숙자들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추가 발생시 기존시설의 이용과 사회에 조기복귀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임.

〈질 의〉

- '99년도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재활작업장을 '99년도에는 2개소, 2000년도에는 7개소를 확대 설치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추진배경이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과 자립기반을 목적으로하여 '94년도부터 연차별로 추진하는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1개소당 5억원(도비 3억 5,000만원, 시·군비 1억 5,000만원)을 기준으로 부지는 시·군에서 건축비는 도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99년도 2개소는 의왕과 용인시에서 부지를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고양시에서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3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2000년도에는 7개소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부천시에서만 신청을 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재정형편상 삭감되었으나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 의〉

-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 내년도 평가계획, 사회복지관장의 자격,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사회복지관 운영평가에 대하여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모델을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년 12월 중에 시·도에 통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중앙의 모델이 시달되면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도 상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 사회복지관의 관장의 자격은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보사부훈령)에 의하면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련 단체에서 부장급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6급이상으로 사회복지분야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인이사회에서 인정한 자로서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 또한 금년도 사회복지관 운영실태에 대하여 도에서 직접 지도·점검한 사실은 없으며 해당 시·군에서 지도·점검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질 의〉

- 경기도 보건의료정보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12월에 납품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결과와 추진위원회 구성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99. 10. 25일 중간보고된 연구용역 내역을 보면 역할은 보건의료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 보건사업기획과 모델개발 및 보건소 보급, 보건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연구, 각종 보건의료정책의 수집, 가공 및 보건소에 대한 정보제공, 보건소 직원 및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전문화 교육, 기능은 교육, 정보제공, 정책연구 등입니다.
- 추진위원회는 '99. 11. 29일 납품되는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사업방향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 의〉

- 도내 대형 적출물 처리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시정명령만 내렸는지, 폐쇄조치한 업소는 없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 변〉

- 도내 적출물 처리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97년 6개소, '98년 12개소, '99년 6개소로 총 24개소에서 시정지시 28건, 고발 3건의 조치가 있었으며 폐쇄조치된 업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원 진정 등이 많은 업소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수시점검하고 있으며, 최근 고발된 안산시 소재 한국환경에 대한 점검내용이 사실 확인

될시 지정취소로 행정처분 계획된 업소가 있어 청문 중에 있습니다.

<질 의>

- 지역보건법에 의거 매4개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결과를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내용과 평가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경기도 보건의료계획의 지금까지 성과와 최종 완료시기는 보건의료계획서상의 사업별 추진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 평가는 평가지침에 의하여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는 12월에 맞춰 평가할 계획이며, 평가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2기 경기도보건의료계획은 2002년 12월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어 계획이 마무리 되는 시기에 맞춰 최종평가후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 실직자를 위한 위생분야 지원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실직자를 위한 위생분야 지원은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음식점, 이용업, 목욕업 3개 업종을 실시하였고 '99년도에는 미용업을 추가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98년도 수혜실적은 6,848명(음식업 790, 목욕업 317, 이용업 5,382)이며, '99년 10월말 현재 수혜인원은 6,400명(음식업 924, 목욕업 253, 이용업 3,224, 미용업 352)입니다.

<질 의>

- 모범음식업 2,600개소에 3억 9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지원 내용은?

<답 변>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추진을 위하여 '99. 8. 5 모범음식점 2,480개소에 372백만원(업소당 15만원)과 우수음식점 600개소에 18백만원(업소당 3만원)등 도합 3,080개소에 390백만원의 자금을 시·군에 교부하였으며, 시·군에서는 대상업소별로 수요물품 조사후 좋은 식단 실천가능 복합·소형찬기, 종사자 위생복, 음식물쓰레기 봉투 등 인센티브 물품을 구입하여 모범(우수) 음식점소에 지원 중에 있습니다.

<질 의>

- 도내 집단급식소, 도시락제조업소 등에 대한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도내 집단급식소, 도시락 제조업 등 하절기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실적 현황을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질 의>

- 장애인재활프로그램 사업 중 집단상담치료 분야에 대하여 내용을 추가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으며, 내년에는 어떻게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장애인재활프로그램사업비를 편성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은 2월초에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심리상담 및 치료재활 4개 분야로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을 받은 결과 총 33개 시설, 4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의원, 교수, 장애인 관련단체, 공무원 등 5명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의 적합성, 참신성, 실용가능성, 전문

성, 지역사회와 유대성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한 결과 33개 시설, 36개 프로그램이 선정되었습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단 상담치료는 사회심리재활분야에 포함되어 18건의 프로그램이 선정되었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하게 되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대로 그 분야만 신청된 것이 없었던 것이므로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에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더 좋은 프로그램 사업이 선정되도록 해당 시·군 및 장애인복지시설과도 적극 협조하여 나가겠으며,
- 재가장애인들에 대한 프로그램 혜택을 5개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어 재가장애인들도 프로그램 사업에 적극 참여함을 말씀드립니다.

〈질 의〉

- 부랑인보호시설의 인권유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의원과 관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점검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동안 추진실적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부랑인들은 알콜중독 및 정신적인 질환 등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보호와 아울러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도는 물론 해당 시·군에서도 수시로 시설점검 등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 및 부랑인보호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나 부랑인들을 차별화 내지 인권을 유린하는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계 전문가 및 도의회 의원님의 참여문제는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권보호에 대한 종사직의 인식향상 및 각종 지원 등을 통해 부랑인보호시설이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음으로 인해 도 및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 '96년 이후 경기도 사회복지종합발전계획이 없다고 자료제출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우리 도에서는 '96. 4. 23일에 53,840천원의 예산으로 경기도개발연구원에 21세기 일등경기구현을 위한 사회복지장기종합발전계획을 용역 의뢰하여 '96. 12월 납품 받은 바 있습니다.
- 우리 도에서는 동 계획에 의거 장애인복지 및 생활보호업무 등 사회복지계획 수립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종합발전계획은 중·장기계획으로써 '96년 이후 재수립한 사항이 없었으므로 이를 자료에 명기하였으나 매년 이를 참고하여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 의〉

- 사회복지법인 임원취임승인 절차와 자격기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취임 승인 절차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에 의거 법인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취임 승인을 요청하면 시장·군수는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승인후 보고하고 있으며, 임원의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19조에 의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임원의 결격사유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임원의 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

〈질 의〉

- 외국인 의료행위 신고를 받은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 변〉

- 우리 도내 외국인 의료인은 아주대학교 병원 등 9개 기관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의료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 국적별로는 미국 국적이 18명, 캐나다 1명, 중국 1명, 대만 7명입니다.

〈질 의〉

- '98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바 있는 학교급식소에 대한 점검실적중 617개교에서 360건을 적발 조치 완료한 실적이 교육청의 추진실적인지 또는 보건복지국 주관으로 점검한 실적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학교급식소는 행정권한에 관한 위임 및 위탁에 의거 초등학교, 중학교는 해당 시·군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도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시 조치완료 사항으로 제출된 360건은 교육청의 지도·점검실적이며, 우리 도에서는 학교급식소 하절기 식중독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도내 학교급식 위탁업소 65개소에 대하여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상('99. 4. 12~4.30)·하반기('99. 9. 7~9. 30)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급식소에 대한 가검물(행주, 도마 등)을 수거 검사 실시하였습니다.
- 또한 학교급식 위탁업소 및 학교급식소에 대하여 대량조리식품 및 도시락 제조 위생관리규범, 식중독 예방요령책자 및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 향후 학교급식소, 위생지도·점검 및 가검물 수거검사 요청시 전문요원을 적극 지

원토록 할 것이며, 아울러 학교위탁 급식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합동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질 의〉

- 65세이상 독거노인에 대한 무료투약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금년은 세계노인의해로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내 65세이상 독거노인 12,755명('98. 12월 현재)에 대하여 경기도약사회 협조로 1인 4일분에 해당하는 무료투약권을 배부, 도내 약국을 이용토록하여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 주로 이용한 질병은 노인 다발성 질환인 감기 35%, 관절염 25%, 신경통 22%, 기타 질병 18%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타났으며
-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관절, 신경계통의 치료에는 투약기간이 짧아 보건소 한방 진료, 물리치료를 이용토록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경기도약사회와 협의,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상대적으로 의료혜택이 적은 소년·소녀가장이나 장애인 등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질 의〉

- 도민복지현장 제정을 위하여 1,59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 제정하였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도지사 공약사항인 「도민복지현장」의 제정을 위하여 금년도에 회의, 공청회 등을 위한 예산으로 1,59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 대통령훈령에 의한 「행정서비스현장」, 기획예산처의 「고객현장」등과 중복제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행정서비스 현장으로 통합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도민복지현장 제정을 위한 금년도 예산은 추경시 삭감 요청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정수천, 이주석 위원('99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99. 11. 22)

<질 의>

- 약사심의위원회 개최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약사심의위원회는 의약품기준 및 안전성에 대한 조사연구 등 약사업무의 대부분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지방에서는 운영실적이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 '98년도 12월에는 의약품안전성관리방안에 대하여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12월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지방약사심의위원회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위원회정비계획에 의거 2000년도에는 폐지할 계획으로 국회에 상정중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이기우 위원('99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99. 11. 22)

<질 의>

- 수원시 등 6개 의료원은 기획관리실 공기업 부서에서 경영측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의료원은 예방의료, 보건의료정책 개발에 접근하여 관리가 요망되므로 도의 공공의료에 대한 정확한 입장과
- 의료원에서 행려환자, 의료보호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 이를 정신보건사업, 노인치매사업과 연계하는 보안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 이동진료 의료시스템상의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와 보건의료정보센터 건립 및 예방의료정책개발연구의 중간보고내용 중 공공의료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우리 도의 공공의료정책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원에 대하여는 과거 도립병원으로서 영세민층에 대한 의료보호 진료기관이 아닌 공기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어 적자 의료원에 대한 민간위탁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 보건의료정보센터 건립 중간보고 내용 중
 - 역할은
 - 보건의료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
 - 보건사업기획과 모델개발 및 보건소 보급
 - 보건소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연구
 - 각종 보건의료정책의 수집, 가공 및 보건소에 대한 정보 제공
 - 보건소 직원 및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전문화 교육
 - 기능 - 교육, 정보제공, 정책연구 등입니다.
- 예방의료정책개발의 내용은
 - 도 차원의 건강증진정책 개발
 - 보건소 단위의 건강증진시범사업개발
 - 도 차원의 신종 및 재만연 전염병관리사업의 목표 및 전략 수립
 - 2000년도 경기도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개발 및 수립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가 주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질 의>

-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 아동이 방과후에 프로그램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방과후 프로그램 진행상황과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아동이 방과후 프로그램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 그간에 특수학교 학부모 회장단 간담회시나 장애인 부모로부터 많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 가장 좋은 방법은 특수학교에서 방과후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만 하나, 학교 교사들의 반발, 피로도, 예산의 부족 등으로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부 시·군에서 특수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시도한 사례는 있었으나 이런 사유로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우리 도에서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29개소의 주간·단기 보호시설에서 일부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나 시설 등에서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질 의>

- IMF 구제금융이후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에서의 비용증가에 따른 거품제거와 음식물쓰레기 과다발생에 대한 음식문화개선 행정관리 실태와 어떤 모델 제시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IMF 구제금융이후 예식피로연의 문제점 및 개선안을 제시코자 '98년 11월 도, 시·군 위생공무원 91개반 176명이 98개소의 예식장 피로연에 대한 현장체험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주요 문제점으로 우리의 전통적으로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식생활 습관개선 지난 및 국민정서와 불부합한 사유로 '98년도 입법예고된 하객음식접대 영업시간의 철회와 예식장 신고제한 폐지, 가정의례에관한법률 폐지 등 예식자의 자율화 추세로 제도적 개선이 지난한 실정이며, 재사용 가능 음식물의 폐기, 피로연 계약시 일괄상차림 메뉴표에 의한 계약, 혼주측의 과시욕과 피로연측의 이익을 위한 상술, 식중독 발생을 사유로 한 남은 음식 포장제공 거부 일괄상차림으로 인한 비기호식품 낭비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 IMF시대에 부응한 “예식후 간소한 답례품 제공”, “음식물접대 대신 하객 거마비 제공”, “피로연 간이뷔페 절충식운영”, “한식 뷔페 피로연 표준메뉴안 및 음식가격표 표기”, “미사용음식 및 재사용 가능음식의 재활용”, “농협과 연계한 1만원 내외

의 상품쿠폰 발행” 등의 개선모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예식장, 장례식장의 음식접대 관행은 국민정서와 부합하게 개선되어야 하는 만큼 국민의 일시적 의식개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속적인 의식개선을 통한 국민교육으로 IMF에 부응한 낭비없는 혼·장례 음식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 의>

- 학교급식 업소에 대한 식중독 발생이 유통과정, 부식관리 과정 등에서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하시면서 학교급식 납품에 대한 관리 및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현재 학교급식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청 예산부족으로 학교내 급식시설수가 부족 위탁계약 공급에 의한 배식학교가 1,172개교 중 252개교(22%)이며,
- 분석결과 위탁공급 업소는 시설상의 문제점보다 조리후 보관, 유통, 배식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높으므로 일반적으로 제조후 4시간 이내 도시락을 섭취토록 공급업소의 신속원칙이 지켜지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 또한 위탁급식업소에서 학교별 공급시 일일 주부직원 고용에 의한 급식 또는 배식인원의 부족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순번제 배식으로 식중독균에 의한 노출 및 감염이 우려되므로 종사자 및 학생들에 의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향후 학교급식 시설의 조리음식은 가급적 빨리 배식하여 위탁급식에 비하여 식중독 발생빈도가 낮으므로 장기적으로는 학교급식 시설을 확대토록 권장하고 학교급식은 행정의 이원화로 지도·점검이 소홀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청과 연계한 합동 지도·점검을 식중독 발생이 높은 계절(4월~9월)은 중복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질 의>

- 정신장애인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신장애인 등록 절차와 지금까지 등록 실적 그리고 향후 지원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9. 2. 8일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으로 등록한 실적은 없습니다.
- 현재 추진상황은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중에 있어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2000년 1월 1일부터는 정신장애인도 1~3급 장애인으로 등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현재로써는 구체적으로 별도의 지원대책이 마련된 것이 없습니다.
- 이기우, 김장훈 위원('99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99. 11. 22)

<질 의>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하여
 1. 사업에 대한 평가실태와
 2. 센터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것인가와
 3.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우리 도에서는 정신보건관련 전문가로 기술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지원단에서는 사업에 대한 자문과 지원, 지도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99년의 경우 11월 중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역을 중심으로 현지방문 지도 및 사업체제와 서비스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바 있으며 평가결과는 취

합중입니다.

- 사업에 대한 평가방향은 사업내용이나 서비스 프로그램의 효율성 등에 대한 상세한 것보다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앙에서 우리 도와 협의 평가지침을 마련중에 있어 향후 이에 준하여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정신보건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센터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여 왔으나 2000년의 경우 광주군, 의정부시, 하남시 등이 정신보건센터를 자체 운영할 계획인바 점차적으로 센터를 민간위탁이 아닌 보건소에서 운영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① 보건소의 정신보건사업 관리역량 제고를 위한 담당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 ②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관심과 예산증액 ③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체계적 홍보 ④ 지역봉사단체 등 지역사회의 참여와 복지 관련 지원이 요구됩니다.
-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맞는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예산확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정신보건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나진택 위원('99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99. 11. 22)

<질 의>

-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가복지센터 중 10개소가 차량 보유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대한 이유와 대책, 그리고 지난 9. 2일 업무보고시 시흥, 부천 2개소가 미운영되고 있다고 답변한 내용과 금번 보고내용의 다른 점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금년도 도내 운영중인 재가복지봉사센터는 33개소로 국비 지원 운영이 18개소이고, 도비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가복지센터는 15개 업소입니다.

- 재가복지서비스를 위하여 기동력 발휘 등 필수적으로 필요한 승합차량 구입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에 노후차량 교체와 신규차량구입에 따른 2000년도 장비구입을 보건복지부에 16대를 신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시흥, 부천 2개소 재가센터가 미운영되었다가 금번에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시흥 목감재가센터와 부천 원종재가복지센터는 10월부터 센터운영비를 지원하였기 때문에 9월 보고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이며,
- 고양 원당사회복지관은 재가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해당시에 설치 미신고 등 제반 여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0년부터 도비와 시·군비로 센터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질 의〉

- 도내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이 190개소에 4,293명이 수용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미인가 사유, 앞으로 대책, 시·군에서의 지원된 사례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 변〉

- '98년 6월까지의 사회복지시설이 허가제로 되어 있었으나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동년 7. 1일부터 신고제로 완화되었습니다.
- 따라서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도 10인이상을 보호하는 미신고시설은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설운영자들이 신고를 하면 행정기관의 통제와 간섭을 받는다는 이유로 자발적 신고를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 미신고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는 1차 완료한 상태이므로 지속적으로 신고이행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시·군에서 미신고시설에 대한 지원사례는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질 의〉

- 도내 39개 보건소 중 4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사업을 시행하고 35개 보건소는 예방접종 실적이 없는데 예방접종 실적이 없는 35개 보건소에 대한 예방접종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보고서에 나와있는 39개 보건소 가운데 예방접종사업이라고 표시된 시·군외에 예방접종사업이 별도로 표기되지 않은 35개 보건소는 예방접종사업이 전염병관리사업과 모자보건사업 등으로 분류되어 예방접종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현재 39개 보건소가 예방접종사업을 모두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 의〉

- 장애인 등록수가 매년마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장애인 시설 확충 계획 및 장애인 복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현재 도내 장애인 등록수는 8월말 현재 10만 7천여명으로서 매년 약 25%씩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이유로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고, 장애인 복지시책이 확대됨에 따라 등록을 미루고 있던 장애인들이 등록을 하므로 장애인 등록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른 시설확충계획은 현재 경기도내 장애인 수용시설은 30개소에 입소정원 3,112명이고, 입소인원은 현재 2,530명으로서 약 81%의 입소율을 보이고 있어, 현재로서는 다소 여유가 있으며, 2000년도 초에도 2개 시설이 개원 준비 중에 있으며,
- 장애인 복지관을 현재 6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2000년초에 2개소(광명, 구리)가 개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 또한 장애인수 증가에 따른 다양한 복지정책의 확대가 필요하여 내년에도 장애인 복지관 2개소(수원, 고양)를 신축하여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 범주확대에 따른 생계보조수당 예산증액과 그룹홈 확대운영(7개소 → 11개소), 장애인 체험대회개최, 프로그램사업 확대, 장애인 복지기금 조기달성 등 시대의 변화에 맞는 정책을 계속 확대 시행하여 나가겠습니다.

〈질 의〉

- 도내 각 시·군에 잔여음식물 나누기 운동과 관련 푸드뱅크 지정현황과 운영 실태 및 위생관리와 관련 장비 보유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잉여 음식물 나누기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잉여식품 나눔은행사업의 추진은 추진부서가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현재 추진실태를 별지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 도내 푸드뱅크는 도 푸드뱅크 1개소(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시·군 24개로 총 25개소가 운영중입니다.
 ※ 푸드뱅크운영 시·군
 수원(1), 성남(1), 의정부(1), 안양(1), 부천(1), 광명(1), 평택(1), 안산(2), 고양(3), 과천(1), 오산(1), 시흥(1), 군포(1), 의왕(1), 하남(1), 여주(1), 광주(1), 김포(1), 화성(1), 포천(1), 양평(1)
- '99년도 푸드뱅크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99년 10월말 현재 1,968개소가 푸드뱅크 기탁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총 17,602건에 672백만원 상당의 음식을 기탁하여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무료급식소, 저소득 가정 등에 곧바로 지원하고 있으며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푸드뱅크 장비에 따른 예산은 보건복지부에 '99. 6월에 건의하였으나 미반영되었습니다.

〈질 의〉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왜 미신고 시설로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향후 대책과 시·군에서의 지원사례가 있는냐고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법인에서 비영리법인 등이 설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일부 독지가나 사회복지사업가가 임의대로 미신고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여건이나 운영형태 등이 법인설립이나 시설 설치기준에 미달되어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98. 7. 1일부터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법인이 아닌 개인도 30인 이하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설치규모나 요건에만 합당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법규내용이 바뀌었지만 미신고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시설 신고요건에 맞지 않거나 시설신고시 후원금의 감소 등의 이유로 신고를 못하거나 안 하고 있습니다.
- 우리 도에서는 금년초에 미신고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신고시설로의 전환이나 예산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운영비, 인건비 등의 지급에 따른 과도한 예산소요, 시설여건상 신고시설들의 전환이 불가능한 시설이 대부분이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 앞으로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노인, 정신질환자 등을 분리 수용토록 유도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이에 관한 대책을 중앙에 건의하여 나가겠습니다.
- 또한 미신고시설에 대한 지원은 지금까지 이웃돕기 연말위문 등에 일부 지원한 사례가 있으나 정식으로 예산에 편성 지원한 사례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상락 위원('99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99. 11. 22)

<질 의>

- 적출물처리관련법규 개정예 따라 처리확인증 발급실시 등 준비상태 및 수거 운반봉투 규격 및 운반업소 지도감독을 투명하게 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적출물처리규칙개정령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적출물을 적출물 수거·운반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적출물 수거·처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적출물 위탁·처리확인증을 의료기관, 적출물 수거·운반업자 및 적출물 수거·처리업자가 각 1부씩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관토록 되어 있으며 이 제도가 시행유예기간을 거쳐 정착되면 수거, 운반, 처리업소의 적출물 처리과정 및 지도감독에 철저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각 시·군 보건소에 공문을 시달하여 적출물 수거, 운반, 처리업소가 확인증을 제작하여 시행유예기간인 '99. 12. 22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적출물 수거, 운반, 보관용기의 규격화는 2000. 2. 2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골판지류, 플라스틱류, 금속류의 대·중·소의 규격품을 사용하여 그 중 금속류만 재사용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이 규격용기의 제작업소는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지정하여 통보키로 한 바 있습니다.

<질 의>

- 외국인 의료인에 대한 지도감독한 내용과 지도감독 사항이 없으면 그 사유 그리고 외국의료인의 의료행위 범위와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 및 종사현황과 함께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면허를 소지할 경우 병·의원 개설에 제한은 없으며 외국면허를 소지하고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의한 교환교수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업무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의료법인에서 의료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현재 도내에는 별첨 명단과 같이 19명의 외국인 의료인이 있으나 우리 의료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의료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지도감독한 사항은 없으며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법위반 여부에 대하여 일선 시·군 보건소에서 정기 및 수시 지도감독시 병행하여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질 의〉

-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실적이 저조하고 지역별로 불균형한 데 대한 원인으로 홍보부족과 식품관련단체 임원에 대한 특혜는 없는지, 대출 및 상환 절차 등 자금운용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융자실적은 '96년도에 191개소 47억 2천만원 '97년도에 297개소 81억 6,100만원, '98년도에 669개소 156억 6,5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나 '99년도에는 IMF난국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설개선을 하고자 융자신청하는 업소가 감소하였습니다.
- 시설개선 융자사업에 대한 홍보는 시·군에서 반상회보와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을 통한 홍보와 식품관련단체 위생교육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식품관련단체 임원에 대한 특혜는 없습니다.
- 대출절차는 식품위생업소에서 해당 시·군에 융자신청을 하면 영업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임의후 선정하여 농협을 통하여 융자지원을 하고 있으며 상환은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납입하고 있습니다.